

사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2006 - 69 호
----------	-------------

제출연월일 : 2006. 11. 10.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우리 지역 내 장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여 노인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지급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2조, 안 제3조)
- 나. 수당 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다. 수당 지급액, 지급일, 지급기간,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라. 수당의 지급 중지에 관한 규정(안 제6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나. 예산조치 : 2007년 당초예산 편성(336백만원)
-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 라. 기 타
 - 가) 입법예고(2006.9.19~10.9)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 나)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를 위해 노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인자를 말한다.
2. “장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수당 지급대상자는 수당 지급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국외 이주자는 제외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 신청) 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수당 지급신청서 및 지급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내역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지급결정 및 지급)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노인에게 1인당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의한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③수당의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입금하며,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배우자 및 가구원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6조(수당의 지급 중지)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현재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로 수당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수당을 받게 한 경우

제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번호	
	주소					
위임 받은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번호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의
지급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수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

※ 계좌번호 확인이 필요하오니 통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